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822

발의연월일: 2022. 6. 8.

발 의 자: 주철현 · 민병덕 · 민형배

서삼석 • 우원식 • 위성곤

윤영덕 • 윤재갑 • 이병훈

이용빈 · 이원택 · 정일영

조오섭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민·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탁금·출자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, 농협·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2022년 12월 31일자로일몰이 도래할 예정임.

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·농간 소득격차 심화,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탁금·출자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69조의2).
- 나.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 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71조 제1항).
- 다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 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72조제1항).
- 라.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 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87조의2).
- 마.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 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88조의5, 제89조의3).
- 바.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 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99조 의4제1항).

### 법률 제 호

#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7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,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7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	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
소득세의 감면) ① 축산에 사	소득세의 감면) ①
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	
(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	
"축사용지"라 한다) 소재지에	
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	
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	
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양도함	<u>2025년 12월 31일</u>
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	
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	
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	
다만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	
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	
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	
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	
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	
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	
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	
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	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	

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### ② ~ ④ (생 략)

제71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·초지·산림 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용 토지등· 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· 초지·산림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 용 토지등・염전 또는 축사용지 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 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20 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

<u>.</u>
·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세71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
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
면) ①
20
<u>25년 12월 31일</u>

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⑧ (생 략)
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 인세법 시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 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)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)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
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
세 과세특례) ①
<u>2025년 12월 31일</u>

액에 100분의 9[해당금액이 20 억원(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"당기순 이익과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

### 1. ~ 8. (생략)

### ② ~ ⑥ (생 략)
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
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세87조의2(농어가목돈마런저축에
대한 비과세)
2025년 12월 31일

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대해서는 소득세·증여세 또는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#### 1. ~ 3. (생략)

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)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 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 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·회 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배 당소득등"이라 한다) 중 2022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, 이후 받는 배 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, 그 배당
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
대한 과세특례)
<u>2025</u>
<u>년 12월 31일</u>

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- 1. <u>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</u> <u>12월 31일까지</u> 받는 배당소 득등: 100분의 5
- 2. <u>2024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
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 ①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 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 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(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, 이 하 "조합등예탁금"이라 한다)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,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이자

 1. <u>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</u> <u>12월 31일까지</u>
2. <u>2027년 1월 1일</u>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 ①
<u>2025년</u> 12월 31일
2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
<u>31일까지</u>

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

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예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
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2022연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"이라한다)중에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

<u>.</u>
② 2027년 1월 1일
ll 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
1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  1
메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        ①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
메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        ①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
메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

"농어촌주택등"이라 한다)을 취 등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 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 ~ ⑧ (생 략)
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